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통한 정체성 확립

김 범 수*

I. 머리말

198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제도가 신설된 이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1999년 신입생부터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수여하기로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27일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치러진 후, 5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제1회 국가시험에는 6,069명이 응시하여 67.2%인 3,487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에는 “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런 문제가 전문가의 자격을 가늠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고, 공부안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하였다”라고 하는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글들이 많았다. 또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을 취득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급과 2급의 업무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4년간 열정과 애착을 갖고 공부한 학문이지만 이 분야를 떠나고 싶다”는 글도 있었다.

그러나 간혹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 보다 더 어려운 과정도 겪어나가야 한다”는 자성과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필자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들을 읽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된 이후, 4년제 학생의 경우 14과목, 대학원 학생의 경우 8과목만 이수하면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가 전문직을 향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이나 시험을 출제하는 측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 아프면 이플수록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은 정비례하여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이란 사회가 인정하는 일정한 유형의 특권을 말한다. 물론 이에 따른 의무가 병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사 제도가 있어 그나마 사회복지사들은 형식적이거나 인정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공식적이고 독점적인 활동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이현주, 2003:162).

아마도 이곳에서 이현주가 제기한 사회복지사의 형식적인 인정이란 다른 전문직과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면허법은 전문직에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그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격한 지원자를 제외시키는 것이다(Biggerstaff, 1995:1809). 1984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긴 이후 우리는 14개의 이수과목이라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여 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가시험을 통하여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택하였다. 때문에 학부에서 14과목 대학원에서 8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4과목과 8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하는데 법의 함정을 교묘히 이용¹⁾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로 1970년 사회복지사업중사자 자격시대이후 현재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가 치루어질 때까지의 발전과정을 분석해 본다. 둘째는 대학의 신입생감소와 사회복지학 전공에 신입생이 물리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게 사회복지사 자격이 발급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 이곳에서 법의 함정을 교묘히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수과목의 학점을 1학점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교실수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II. 선진제국의 자격제도와 자격제도의 구성내용

1. 8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표 1> 8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국가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해당자격의 명칭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Sozialarbeiter Sozialpädagoge	Socionom
법적지위와 그 내용	-국가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 법내 자격규정 근거	-국가자격제도 -명칭독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Sozialarbeiter는 주 단위 에서 국가자격 제도(명칭독점) 문부교육관계는 주가 법률적인 권한을 가짐	수료증 자격(칭호)
양성코스 및 자격취득 방법	-2년제대학+현 장경력1년 -4년제대학(14 과목이수자) -대학원(8과목 이수자) 2급자격부여 -1급:국가시험	-고교졸업자+실무경 력+과목이수 -2년제대학+실무경 력+과목이수 -4년제대학+과목이 수 응시자격부여 -국가시험	전문단과대학, 종합대학에 서 4년과정을 수료한자 과정수료와 함께 치루는 시험을 통해 국가가 인 정하는 자격을 수여(국가 에서 실시하는 통일시험 은 없음)	사회단과대학에서 2-3.5년의 과정을 수료 하고, 수료중에 명시 한 것을 중심으로 입 용자격화 하고 있음
주요활동 분야 해당직종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시설 의 직원	공공 및 민간 사회 복지시설의 직원	-Sozialarbeiter- -공공상담원조기관직원 -사회사무소의 워커 -소시얼스태이션의 워커 -공사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지도원 -의료기관 소시얼워커 -민간복지단체 직원 -공사아동복지시설, 교육시설의 직원	-복지사무소의 소시얼 워커 -교정시설의 워커 -의료소시얼워커 -학교소시얼워커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
해당자격의 명칭	-DipSW(The Diploma in Social Work: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CCETSW에서 일정과목 수료자에게 자격부여 -CQSW(소시얼워커자격인정,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Social Work)일반적으로 소시얼워커로 호칭	-Assistance Sociale -Assistance de Service Social	인정 소시얼워커(Certified Social Worker) 단 BSW, MSW, ACSW는 주에 따라 자격부여. CSW등록 등이 있음
법적지위와 그 내용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코스 수료자에게 CCETSW(중앙소시얼워커교육훈련협의회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Social Work)에서 자격수여	-국가시험 명칭독점(가족,가족부조법에 규정)	-BSW, MSW는 CSWE가 인정하는 코스를 수료하고 학위자격의 명칭 독점 -ACSW는 민간인정자격 -각주에 따라 등록, 인정, 면허 등의 자격부여 -CSW는 민간등록자격(민간인정, 등록자격은 전미국소시얼워커협회에서 인정함)
양성코스 및 자격취득 방법	-대학학부나 대학원에서 1-4년 코스의 다양한 과정이 있음 -폴리테크닉(고등전문학교) 2-3년의 각과정 -CCETSW에서는 자격취득후에 연수를 추진 -국가에서 인정한 코스 수료후 자격부여(통일시험 없음)	-전문양성교·대학의 3년코스(커리큘럼의 내용은 국가의 인가와 통계를 받음)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시험에 의함(단 양성교 등에서 실습이나 구술발표 등이 전체 3/4을 차지함) -양성교에의 입학은 가족워커, 간호사 등의 직업자격을 가진자는 입학가능	-BSW, MSW는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 -ACSW, CSW 등록은 특별히 양성제도가 없지만, 현장에서 일정기간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ACSW는 자격인정시험을 전미국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주요활동 분야 해당직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부 소시얼워커 -공공입소시설, 주간보호시설의 소시얼워커 -민간복지단체지도직원 -보호관찰케이스워커 -지방자치단체교육서비스워커 -의료소시얼워커	-복지사무소, 병원, 학교, 사회보험, 기관 등의 행정기관 등의 소시얼워커, 가족원 조워커, 의료소시얼워커, 기업내소시얼워커,	-의료소시얼워커 -민간복지단체지도원 -지방행정복지기관직원 -학교소시얼워커 -개업소시얼워커

자료 : 日本 社會保障統計年報, 法研出版社,1997, pp. 450-453
 영국BASW, 스웨덴 Socionom연맹 자료 참조 재정리, 2003.
 미국의 ACSW :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미국의 CSWE : Council of Social Work Education

이상의 <표 1> 8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과 같이 스웨덴이나 영국, 한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는 명칭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독점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업무독점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프랑스나 일본 한국은 통일된 국가시험에 의하여, 미국의 경우는 국가시험 이상으로 공인된 ACSW에서 전미국 자격인정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CQSW제도는 우리나라의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지만 일정한 시험을 실시하기 보다는 경력과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중 가장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4년제의 경우 14과목의 이수 과목을 수료하면 일단 2급 자격 취득 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과목이수자라 할지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과목별 과락제도는 없으며, 소위원회에서 합격비율을 매년 정하며, 합격률을 발표하되 합격 커트라인은 발표하지 않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응시자의 30%내외로 합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150문제 출제에 90문제 합격(100점 만점에 60점 합격)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4과목의 과목 이수자에게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해도 취득자가 많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은 나름대로 희소성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대학의 신입생감소, 사회복지학 전공의 급증, 학부제의 실시 등으로 복수전공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비정상적인 교육²⁾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그 희소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2. 전문 자격제도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

전문 자격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내용은 전문직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는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신설 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을 둘러싸고 유사명칭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부분적으로 업무독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전공자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나 변호사 약사 간호사와 같이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현재 법적으로 명칭독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경우는 이성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가 이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와 벌금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될 때, 사회복지사의 업무독점과

2) 이곳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교육이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대학 중, 전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명칭독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결국 사회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은 요구되고 있으나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독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배제하기 보다는 명칭독점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京極高宣,1987). 이러한 논의 끝에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에 관한 유사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명칭독점에 관한 내용만 법에 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도에 사회복지사 관련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당시 법 개정의 구성내용에 명칭독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었다면 최근 전전가정기본육성법과 제정을 둘러싸고 가정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저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II.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주변 환경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시대(1970-1983)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자격제도로 1983년까지 유지해 오던 자격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4년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종사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제기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근무한 사람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과 함께 1982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제도로 개정하게 된다. 당시에만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조직되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을 논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8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1998년 12월까지 전국 16개의 지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교부업무를 대행하다가, 1999년 1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회로 자격업무를 이관하였다. 그 동안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업무를 대행하지 못한 것은 그 만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적인 조직력과 위상이 매우 약했음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 시대(1984-2002)

1) 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

1982년 6월부터 조직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안은 '사회복지사'와 '사업사업사', '사회사업가'였다.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사회사업사'나 '사회사업가'보다는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귀에 익숙했던 사회사업가(社會事業家)라는 명칭은 전문가로서의 호칭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社會事業家의 집 家자에 대한 호칭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사를 선비 士로 할 것인가, 스승 師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사회복지사'는 교사(敎師)의 師가 적당하다는 의견과,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 해주고 있는 변호사(辯護士)의 士가 알맞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성격상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변호사의 士가 사회복지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자로는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하지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나 시설 근무의 기회현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1급과 2급 3급으로 등급을 매기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초중고 교사의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자격제도를 참조하게 된 것이다.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감안하여, 국립사회복지원에서 일정기간 연수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제도를 만들었다. 2급의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규정³⁾이다.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 성립 배경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기 연찬회나 세미나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14개의 사회복지관련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6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

3) 이상의 내용들은 발표자가 1977. 9 - 1983. 3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부여되었다.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은 1998년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까지 4회의 시험과정을 통하여 571명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1999년 입학생부터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는 것으로 자격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개정하게 된다.

3) 대학의 신입생 감소와 사회복지학과와 증가

최근 우리사회에 가장 큰 변화 요인 중 하나는 출산을 감소와 대학의 신입생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 대학의 경우 신입생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의 신입생 감소와 함께 학과의 증설과 통폐합의 영향으로 최근 가장 많이 신설된 학과가 사회복지학과(학부, 전공 포함)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의 경우 사회복지학과에서 인접학과와 학부제를 만들면 학생들이 사회복지전공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사회복지전공과 같은 학부내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물론 서울의 일부대학은 예외이지만 지방의 경우 사회복지학과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대학과 특수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하는데 성공한 대학이 많다. 최근에는 사이버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에서 관련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앞 다투어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여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교수와 강사를 통하여 무늬만 사회복지인 과목을 허술하게 공부하고 배출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정상적인 여건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다.

<표 2>와 같이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이하 종사자자격) 제도가 생긴 이래 1980년까지 종사자자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4,002 명이였다. 그 후 법 개정과 함께 종사자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변경되면서 1985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2,493명, 1990년까지는 7,804 명이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매년 1,062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은 것이 된다. 1996년에는 2,658명, 2000년에는 7,154명, 2003년에는 7월까지 14,018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는 83,341명이 된다.

<표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단위 : 명)

구 분	총 계			1 급			2 급			3 급			
	Total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Classification	교부 누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Both sexes	Male	Female	Both sexes	Male	Female	Both sexes	Male	Female	Both sexes	Male	Female	
1980	교부누계	4,002	1,265	2,737	-	-	-	-	-	-	-	-	
1985	교부누계	2,493	932	1,561	547	278	269	623	260	363	1,323	394	929
1990	당분기	1,398			897			240			261		
	교부누계	7,804	2,818	4,986	3,501	1,389	2,112	1,816	747	1,069	2,487	682	1,805
1995	교부누계	18,586	6,106	12,480	9,490	3,371	6,119	3,850	1,425	2,425	5,246	1,310	3,936
1996	당분기	2,658	647	2,011	1,373	361	1,012	343	123	220	942	163	779
	교부누계	21,244	6,753	14,491	10,863	3,732	7,131	4,193	1,548	2,645	6,188	1,473	4,715
1997	당분기	3,224	837	2,387	1,850	528	1,322	332	124	208	1,042	1,495	857
	교부누계	24,468	7,590	16,878	12,713	4,260	8,453	4,525	1,672	2,853	7,230	1,658	5,572
1998	당분기	4,151	1,054	3,097	2,463	715	1,748	330	129	201	1,358	210	1,148
	교부누계	28,619	8,644	19,975	15,176	4,975	10,201	4,855	1,801	3,054	8,588	1,868	6,720
1999	당분기	6,519	1,417	5,102	4,149	1,059	3,090	2,100	304	1,796	270	54	216
	교부누계	35,138	10,061	25,077	19,325	6,034	13,291	6,955	2,105	4,850	8,858	1,922	6,936
2000	당분기	7,154	1,514	5,640	4,423	1,123	3,300	2,492	330	2,162	239	61	178
	교부누계	42,292	11,575	30,717	23,748	7,157	16,591	9,447	2,435	7,012	9,097	1,983	7,114
2001	당분기	10,301	2,323	7,978	6,280	1,651	4,629	3,845	612	3,233	176	60	116
	교부누계	52,593	13,898	38,695	30,028	8,808	21,220	13,292	3,047	10,245	9,273	2,043	7,230
2002	당분기	16,730	3,986	12,744	10,487	2,854	7,633	6,073	1,067	5,006	170	65	105
	교부누계	69,323	17,884	51,439	40,515	11,662	28,853	19,365	4,114	15,251	9,443	2,108	7,335
2003 . 07	당분기	14,018	2,616	11,402	4,839	807	4,032	9,129	1,790	7,339	50	19	31
	교부누계	83,341	20,500	62,841	45,354	12,469	32,885	28,494	5,904	22,590	9,493	2,127	7,366

자료 :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인력수급과 대학교육의 과제』, 199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내부자료, 2003. 자료 참조 필자 재정리.

- 1980년 교부누계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을 말함.

- 1985년도는 별개정과 함께 소급 적용하여 발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을 말함.

또한 1996년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는 2,658명이었으나, 2002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는 16,730명으로 6년만에 6.3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학과가 급증하게 된 요인은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대

학이 생존해나가기 위해 학생모집이 쉬운 전공을 무차별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4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1980년대에 20여개의 대학에서 매년 800여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만들어 진 제도가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2003년 7월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14개의 이수과목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대학의 수 (단위 : 대학)

대학 구분	자격이수가 가능한 대학
2년제 대학	88
4년제 대학	142
사이버 대학	16
특수대학원	62
일반대학원	25
계	333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2003, 7.

<표 3>과 같이 우리나라의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14과목, 대학원의 경우 8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의 수는 333개교이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경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학은 60개 대학⁴⁾이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로 가입을 하려면 석사나 박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을 전공한 자가 전임교원중 3/4이 전공학과의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14과목의 이수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일반 대학들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도 회원대학으로서 가입을 어렵게 규정하고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전공이 각 대학에 신설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이 입학정원 내에서 전공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금 예외이기는 하나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는 전문 인력 수급의 증감에 관한 조정을 관계부서와 밀접하게 협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의 인력수급은 사회복지교육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의 뜻과 상관없이 대학의 신입생 증원전략과 함께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동안 사회복지학 전공은 인력 수급과 관계없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4)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가입한 60개의 대학중 2년제는 6개, 4년제는 54개 대학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대학중 26.1%만이 회원교로 가입을 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 연구

결국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란 대학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자격을 한 단계 강화시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2003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01년도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당시 연구팀(조홍식, 김범수, 양옥경)은 2001년 7월에, 1989년부터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실시해온 일본의 사회복지사 시험센터와 노동후생성을 방문하여 일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시행착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추진위원회의 결성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도 3월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회관)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추진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그 시험기관으로 위탁지정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그동안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국가시험의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한 기관으로 국가시험에 관한 공신력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수안보 컨퍼런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출제위원 66명은 4월 18일-27일까지 9박 10일 동안 수안보에 기거하면서 제1회 국가시험 문제출제에 들어간다.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로 구성된 출제위원들은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험출제에 임하게 되는데 당시 시험출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난이도의 조절이었다.

시험출제 이후 마지막 3일간 인쇄에서 배송에 이르는 동안, 시험출제위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당시 세미나를 '수안보 컨퍼런스'라 명하고 그 대안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세미나 이후 당시 가칭 '전전가정기본육성법'과 '가정복지사 자격제도'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이

5) 당시 수안보 컨퍼런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김범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양옥경, 케어복지사 자격제도 : 이해영』,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전전가정기본육성법 제정과 가정복지사제도 대처방안 : 김진학』의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던 중 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자리에서 가정복지사 자격 저지를 위해 170만원의 종자돈이 모금되기도 하였다. 이 기금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가정복지사 자격신설 저지를 위한 용도기금으로 사용되었다.

IV.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앞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을 신설하거나 14개의 이수과목을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 회원규정에 보면 3/4이 전공한 교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 또는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란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바로 그것은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의 제도화

의료법 제25조 3항의 ②에 보면 “醫療人이 아니면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名稱이나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3조 2항의 ③에 보면 “藥師의 免許를 받지 아니한 者는 藥師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없어 최근 가칭 건전가정기본육성법(안)을 제정하려는 과정에서 가정복지사 자격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번의 자격관련 규정 개정시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모법에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사”라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관련법에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종교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00복지사 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버젓이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법적대응 등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유사명칭과 관련된 규정은 <표 4>와 같다.

<표 4> 약사법과 의료법의 유사명칭 관련 규정

구분	내용	벌칙
약사법	제3조(약사의 자격과 면허) ③ 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③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5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상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 제3조의 2제3항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조(벌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 약사법과 의료법, 법제처 홈페이지, 2003. 8.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현행 사회복지사업중사자훈련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하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나 약사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의 연수교육)에서는 연수시간의 규정과, 연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사항, 수료증 교부사항, 연수교육에 관한 교육비의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개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자격규정에도 반드시 보수교육규정이 보완되어 자격취득 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년에 한번씩 신고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자격 취득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갱신제도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 유지 및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규정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규정

구 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사회복지사
관련법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교 육 훈 련	* 보수교육 매년 10시간 이상	* 연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없음
협 회	* 보수교육 업무 위탁수행	* 보수교육 업무 위탁수행	* 보수교육 업무 위탁 수행	-
과태료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자료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법제처 홈페이지, 2003. 8.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련 내부자료 참조.

3.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도의 도입

1) 필요성

현재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점만 취득하면 2급 자격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때문에 자료로 남기기 어려운 정도의 편법을 통한 사회복지실습⁶⁾이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대학들은 나름대로 외부 평가도 있어 실습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나, 학생수가 많고 복수전공이 많은 일부대학의 경우는 비판의 소지가 많다. 지난 4월 수안보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사회복지실습 인증제에 관하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이사회(4월 20일)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 3개단체 연계 공청회(6월20일)⁷⁾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실습지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2) 실습인증의 운영주체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실습을 인증제로 실시할 경우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6)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형태는 사회복지기관·시설 실습 외에, 견학을 통한 실습, 레포트를 통한 실습, 강의를 통한 실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실습을 통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의 부여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7) 3개단체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행정연구회 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연합회나 협회 지부조직들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실습인증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는 자격요건에 맞는 기관이나 시설들을 사회복지실습기관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실습생은 반드시 인증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받았을 때, 실습학점으로써 인정을 받게 된다.

3) 실습인증제의 추진 시기 및 실습인증시간

사회복지실습인증제의 실시는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는 2005년 신입생부터, 4년제 대학은 2004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실습인증은 2년제의 경우 2학년부터, 4년제의 경우 3학년부터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2년이라는 연구 검토시간이 남게 된다.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습인증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은 학부의 경우 한 학기 필수로 되어있으며, 대학원의 경우는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경우 실습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⁸⁾.

미국의 경우 우리와 상황이 다르지만 ACSW 자격은 석사학위 취득후 3,000시간, QCSW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현장에서 2년간 3,000시간 직원으로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도 최소 900시간의 현장실습을 요구하고 있다(윤현숙, 2001).

일본의 경우는 4주간 20일간 160시간을 인증된 기관 시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기중 실습지는 15주간이지만 방학의 경우는 기관 · 시설에 따라 3주 또는 4주간의 실습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학기 중 실습인증은 한 학기 15일을 기준으로 120시간, 방학 중 실습도 최소 1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참여할 것을 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원의 경우도 동일하다.

4) 사회복지실습인증기관 · 시설의 요건

앞으로 사회복지실습인증제를 추진해 나가려면 사회복지실습인증기관 · 시설의 요건으로서 사회복지실습 슈퍼바이저의 경력, 사회복지실습비, 실습내용, 실습기록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의 지부조직 등의 개편도 필요하다⁹⁾.

4.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앞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할 과

8) 대학원의 경우도 개정법에서는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

9)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실습인증에 관한 문제제기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는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도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윤이 창출되면 무엇이든지 다 쫓아가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한다면, 학생모집만 되면 무엇이든지 쫓아가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대학과 평생교육원의 실정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나 약사를 어느 교수나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고 비전공 교수들이 사회복지학의 전 과목을 가르쳐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

양성교육기관의 인증제도는 먼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교과목에 대한 교수들의 자격과 여건을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온라인상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을 개설하고 교육시키는 사이버대학에 관해서도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과는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인증제도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의 발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의 조정과 난이도

1) 국가시험과목의 개정방향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민감한 국가시험과목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수과목은 <표 6>과 같다.

<표 6>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수과목

필수 과 목 (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과 목 (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2003.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수과목은 필수 10과목과 선택 2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치루려면 <표 7>과 같이 필수 6과목과 선택 16과목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8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시험과목은 8과목이지만 출제과목은 22개 과목인 셈이다.

<표 7>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과목(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필수 과목 (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선택 과목 (2)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사회복지법제 중 1과목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2003.

이렇게 응시자들에게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주다 보니 출제과목이 너무 많아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국가시험을 실시해 온 이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역사상 최고로 많은 응시과목을 개설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지난 6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양옥경은 사회복지사 응시과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과목을 포함시키는 안을 내 놓았다.

- (1)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지역사회복지론)
- (2)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장론)
- (3) 법과 행정(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4) 인간행동의 이해(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론)
- (5) 분야론 개론(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문제론)(양옥경,2003).

양옥경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당시 토론자로 나섰던 김현희는, 시험과목을 5개영역으로 묶어서 제시한 안은 오히려 응시생들에게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모양만 5개영역이지 내용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생들에게 오히려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의 7과목을 시험 필수과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시험과목개선에 관한 논의는 결국 여론 수렴으로 끝났다. 시험과목 개선방안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조정할 경우 전공별 담당교수 간에 민감한 논의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개정방안 제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과목은 크게 두가지 방안으로 논의

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안은 현재의 필수 시험과목 6개 과목과 선택과목 16과목을 재조정 통합하는 방안이다. 필수과목을 조정할 경우 임상과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과목 중,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 이밖에도 자격이수과목의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법제와 지역사회복지론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넣는 방안도 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경우 미국의 3대방법론인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이 사회복지실천론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을 빌미로 필수 시험과목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그 동안의 자격관련 위원회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의 견해는 지역사회복지론에는 미국의 Community Organization의 조직화 이론 이외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재가복지, 공동모금,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NGO, 지역사회자원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Community Organization과 지역사회복지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필수과목으로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복지조사론을 5지선다의 주관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하는 문제의 제기와 함께 필수과목에서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재검토되거나 시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선택과목의 경우 청소년복지론에 교정복지와 학교사회사업을 포함시키고, 가족복지론에 여성복지론을 포함시키지는 안¹¹⁾도 있다. 아무튼 현행 필수와 선택의 시험과목은 재조정 축소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안은 현재의 필수 6개과목과 선택 2과목, 평균 60점(과락 40점)이상의 합격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현행 300문항(300점)¹²⁾에 과목별로 현재보다 필수과목을 늘리고 시험문항을 과목의 가중치에 따라 문항수를 차별화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험문항은 필수과목 40문항(40점), 선택과목 30문항(30점)으로 되어있는 것을, 필수과목의 경우 25-30문항으로 하여 8과목내외로, 선택과목은 4과목으로 하여 15-20문항으로 하여 과목수를 늘려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총점대비 60점(180문항) 과락 40점을 합격기준으로 하자는 안이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영역별로 재조정하여 현재보다 4-5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0)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임상과목으로 3과목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1997년 과천청사 앞에서 가정관리학 전공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방안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던 후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보다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을 것이다.

11) 이러한 의견들은 지난 4월 국가시험출제시 비공식적인 소모임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12) 제1회 국가시험에서는 필수과목은 40문항(40점) 6과목, 선택과목은 30문항(30점) 2과목을 기준으로 합격점은 180점이었다.

2) 국가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2년제, 4년제, 사이버대학이 246개대학, 대학원이 87개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2년도에 16,730명, 2003년 7월 현재 14,081명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결국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이다. 최근에 이용 시설에 사회복지사 1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작게는 50여명, 많게는 1백여명이 넘게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곧 훈련된 선임사회복지사를 거리로 내몰고, 기관·시설에서는 신입 사회복지사들을 저임금으로 충원하여 운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2003년 7월부터 서울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일하던 것을 멈추고 거리투쟁으로 나섰다. 현재 서울소재 사회복지사의 평균 초임은 교사의 67%, 간호사의 7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신용규, 2003:13).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국가시험을 통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만이라도 난이도를 점차 강화해 합격률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3년 제1회 국가시험에서는 67.2%인 3,487명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1급의 경우는 앞으로 50%대까지 합격률을 낮추어 전문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급증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국가시험을 실시한 일본의 사회복지사 합격률은 우리나라와 같이 60점 이상이 합격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소수의 전형위원회에서 매년 커트라인을 결정하여 응시자의 20%-30%를 합격시키고 있다. 물론 커트라인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150문제 출제에 90문제 합격(100점 만점에 60점 합격)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응시자격만을 부여하고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자격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필자는 14과목 이수자에게 부여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철폐하고 14과목 이수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만을 부여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대학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 기회에는 사회복지실습 인증제를 실시하여 2급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국가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1급 자격이라도 가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과정은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일부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그 길만이 사회복지사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규·윤상용(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인력의 수급분석과 정책과제'.

- 윤현숙(2001),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조홍식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 방안 연구', 2001.
- 신용규(2003),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제언 : 임금을 중심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파워복지! 2003 사회복지사 결의대회'.
- 조홍식, 김범수, 문진영 외(200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1996),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발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1995), '한국사회복지인력수급과 대학교육의 과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내부자료(2003).
-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0),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안.
- 법제처 홈페이지(2003, 6).
- 보건복지부(2003), 사회복지사업법.
- Biggerstaff, M. R.(1995). Licensing, Regulation, and Certification In Edward, R. C. etal.(ed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 NASW. 김만두, 김용일, 박종삼(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서울: 나눔의집.
- 京極高宣(1987), '福祉専門職の展望', 日本全國社會福祉協議會.
- 日本 社會保障統計年報(1997), 法研出版社.